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령친화산업 통계조사 실시 근거 마련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41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주요 검토 사항	5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11.

(3) 회 부 일 : 2025. 2.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37조6900억원에서 2021년 72조3000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43조64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작성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령친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¹⁾.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고령친화산업 통계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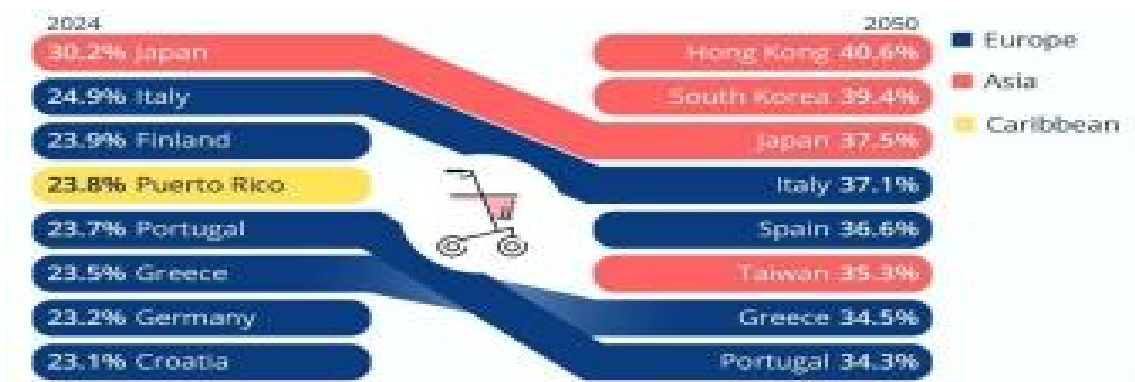
1)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실시할 관련 통계조사의 종류 및 조사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첩부 사유서, 2025. 2. 19.).

현행	개정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주요 검토 사항

- 202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000명으로, 고령사회(2017년)에서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 2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전망(2050년)>



* 자료: 「고령화 사회 에이지테크 기술 및 정책 현황」(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고령친화산업(실버경제²⁾)의 부가가치도 2015년 4.2조 유로(약 5,774조원, 유럽 GDP의 28.8%)에서 2025년 6.4조 유로(약 8,800조원, 유럽 GDP의 31.5%)로 전망되고 있고³⁾,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도 2012년 37조 6,900억원에서 2022년 82조 7,000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43조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⁴⁾.

2) 실버경제라는 개념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의미함(「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성장 현황 및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3) 「2023 보건산업백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4) 「2022년 고령친화산업 제조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 2022년도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자료: 「실버시장과 에이지테크(AgeTech)」(국회도서관, 2024)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5. 18. 제정)⁵⁾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2006. 1. 28. 제정)⁶⁾에 따라, 2008년부터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12. 28.)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⁷⁾을 포함하고 있음.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이유(2006. 12. 28.)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실태조사 등) 발체 >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공급)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분류체계 기반 전국단위 사업체 표본조사(격년, '20~)

* (수요)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수요 및 소비특성 전국단위 고령자 표본조사(격년, '21~)

- 연령, 장애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편리한 제품·환경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발 지원 확대, 제품·서비스 인식 확산 유도 기업혁신, 사용성 개선, 사회적문제해결 등 디자인 활용 성공사례 공유
- 리빙랩(Living lab), 고령친화센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사용성 검증, 체험기회 및 정보 제공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그간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이라는 예산사업(2023년 30억 2,200만원)의 세부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통계분석’(2023년 9,200만원)을 실시하여 왔으나, 다른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2024년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음⁸⁾.

8)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체 출연금을 확보하여 「2023년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120백만원)를 수행하였고, 2025년 5월 공표할 예정임.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32	2,332	2,672	3,022	전액 삭감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출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 관계 공공기관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 정비도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통계조사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9